

의안번호	2202610
의 퇴 인	황명선 의원
회 답 일	2024. 9. 20.
추계번호	24F30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8조의5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 - 감면율: 10%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5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세액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른 법인·소득세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내용
- 그러나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되는 가맹점의 법인·소득세(사업소득) 관련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

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2024년 1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미발행 지자체 현황: 2024.1 기준

구분	발행 지자체	미발행 지자체
합계	190개(광역시 11개, 기초 179개)	53개(광역시 6개, 기초 47개)
서울	서울특별시(광역시), 25개 자치구	
부산	부산광역시(광역시), 동구, 남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대구광역시(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인천광역시(광역시), 동구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광주광역시(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대전광역시(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울산	울산광역시(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광역시)	
경기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광역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광역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북(광역시)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남(광역시)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북(광역시)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전남(광역시)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북(광역시)
경남	경상남도(광역시),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	제주도(광역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고은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은비	02-6788-4839	eunbi15@assembly.go.kr